서울특별시의회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제 안 설 명

□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,

안녕하십니까?

더불어민주당 서윤기 의원입니다.

□ 「서울특별시의회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릴 수 있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.

□ 본 개정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.

□ 「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」 제8조는

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
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.

□ 이에 따라 서울시는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하고,

그 결과를 서울시 인권위원회로부터 권고 의결 받아

조례상에 반영 중입니다.

□ 본 개정안은 인권영향평가와 인권위원회의 권고 의결 결과를

현행 「서울특별시의회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」에
반영함으로써 시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시키는데
기여하려는 것입니다.

□ 개정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
참고해 주시기 바라며,

□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,
개정안의 취지를 살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.
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.
감사합니다.